

◎ 정보통신부 공고 제1998-130호 ('98. 11. 16)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선정 · 지원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정보통신기업의 전문화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개발가치가 높은 육성품목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생산하는 중소기업정보통신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육성품목"이라 함은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에서 개발·생산하는 것이 적합한 품목중 이 지침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2.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이라 함은 이 지침에 의하여 육성품목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2장. 육성품목 및 신청대상

제3조(육성품목발굴대상) 육성품목의 발굴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용핵심부품 및 보드
2. 정보통신기기
3. 소프트웨어 및 DB
4. 멀티미디어콘텐츠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4조(신청대상)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선정·지원사업(이하 "선정·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중소기업으로 육성품목을 전문적으로 개발·생산하는 기업중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1.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선정이 취소된 기업
2.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3. 상장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업 및 그 계열기업

제3장.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

제5조(관리기관) ① 장관은 선정·지원사업의 효율

적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안) 작성
2. 선정·지원사업의 관리 및 종합분석
3. 지원기관의 관리감독
4. 육성품목의 발굴
5.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평가·심의
6. 기타 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제반업무

제6조(지원기관) 장관은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육성품목 발굴 및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

제7조(육성품목발굴기준) 육성품목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품목
2. 개발기술의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큰 품목
3.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정보통신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

제8조(육성품목의 발굴)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고 또는 정보통신관련 단체 및 협회, 전문연구기관등에 추천을 의뢰하여 육성대상품목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조사된 육성대상 품목을 토대로 제7조의 기준에 의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육성품목선정안을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조(사업공고) ① 장관은 제8조 제2항에 의해 제

출된 선정안을 검토·확정하여 육성품목을 확정한다.

② 장관은 선정·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공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서 접수 및 보완)① 선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한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현황표
2. 사업계획서
3. 사업내용요약서
4. 기타 선정평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선정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육성품목 개발실적 및 사업화 전략
2. 기술개발투자 실적 및 기술개발인력 현황
3. 산업재산권, 정보통신분야 규격획득, 신기술 인증 및 기술개발관련 수상실적
4. 육성품목 개발·생산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5. 육성품목기술개발 및 경영자의 기술개발의욕
6. 기업의 재무실태와 경영성과등
7. 기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영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육성품목별로 대상기업을 선정하되 공동기술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복수기업을 선정한다.

제12조(평가절차) ①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계량평가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비계량평가는 관리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심의 및 확정)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안(이하 '선정안'이라 한다.)을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장관은 제출된 선정안을 검토·확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4조(인증서의 발급등) 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별지 제2호에 의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에 의한 인증간판의 사용을 승인한다.

제5장.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제15조(지원내용) 장관은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화촉진기금사업 참여시 우대지원
2. 금융기관, 투자회사등의 융자 또는 투자알선
3.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술우대보증 지원
4. 애로기술지원
5. 전문기술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홍보
7. 통신사업자등에 대한 구매알선
8. 시험분석 및 측정장비, 시험시설이용 지원
9. 수출시 수출보험료 할인 등 우대지원

10. 기타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6조(지원절차)①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은 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한 후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기관에 통보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실시한다.

제6장. 지원기간 등

제17조(지원기간등)①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중에 주식시장에 상장하였거나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3년이내라도 지원을 종료한다.

② 지원종료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 지원만료일자의 당월말일
2. 주식시장 상장 또는 종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당해연도 말일

제18조(지원기간연장) 제17조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 연장은 육성품목에 대한 개발 및 사업성과가 우수한기업으로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신청을 받아 2년간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선정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1. 부도 및 법인해산, 폐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2. 육성품목을 개발, 생산하지 않거나 업종을 변경한 기업
3. 대기업에 합병 또는 인수된 기업

4. 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참여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아 그기간이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지원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제7장. 사후관리

제20조(지원실적보고) 지원기관은 매분기별로 업체에 대한 지원실적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기관별 지원실적 및 효과를 종합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1조(지원성과조사)① 관리기관의 장은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의 육성품목 개발상황 및 매년 1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의 장은 육성품목에 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8장. 보 칙

제22조(관리기관의 지정등)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선정·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3조(지원기관의 지정등)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2.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자
3.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5.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6. 한국통신산업협회
7. 기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지원기관은 제16조의 규정의 지원내용중 장관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③ 장관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원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지원사업의 수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98년도에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1994년도까지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간으로 한다.

② 제18조의 지원기간연장에 관한 규정은 1995년도에 선정된 기업부터 적용한다.